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92

발의연월일 : 2021. 7. 13.

발 의 자:이종성·백종헌·강기윤

강민국 · 김용판 · 박대수

유한홍 · 임이자 · 김형동

김태호 · 조명희 · 이명수

최형두 • 박대출 • 지성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·유치원, 아동복지시설,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"사회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세 감면의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 을 수행하고 감면을 받는 타 법인·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 서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 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7항(종전의 제6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-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하는 「민 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 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(입소자의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

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·부자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
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한센병요양시설
- 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3. 그 밖에 지원 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-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하 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감면) ① -----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 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 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-----. <단서 삭제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 |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용하는 경우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・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

- 니하는 경우
-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

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

 각・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

 사용하는 경우
- 영하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갖춘 단체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
 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 (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
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
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
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
 정한다)
- 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 가족복지시설・부자가족복 지시설 또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
 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
 시설 중 한센병요양시설
 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<u>제5항</u>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

- 3. 그 밖에 지원 대상 및 공익

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

 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.
-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
-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③ ~ <u>⑥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
- ① ------제6항-----

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	
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	
각 경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